

<p>중요사항 연구·조정</p> <p>2.노인·장애인복지 및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개선사항 심의·건의</p> <p>3.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p> <p>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의 심의·의결</p> <p>5.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건의</p> <p>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1)부시장, 여성정책관,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이 된다.</p> <p>②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행정(1)부시장과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③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여성정책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p> <p>④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와 아동·여성보호 및 보건사업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2.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 또는 아동·여성보호사업을 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p> <p>3.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p> <p>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위촉된 위원의 임기 동안 이 조례에 의하</p>	<p>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p> <p>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탁사업)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이동진료사업 포함)</p> <p>2.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p> <p>3.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p> <p>4.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지 및 재활사업</p> <p>5.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사업</p> <p>6.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p> <p>7.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p> <p>8.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p> <p>9.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p> <p>10.기타 한센병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p> <p>제3조(사업의 위탁)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탁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에게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하여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사업보고)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는 위탁사업에 대한 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p>
--	--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및 사단법인 한성협동회 서울특별시지부간에 체결한 제2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03
----------	-----

2000년 11월 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청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9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2000년 11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

가. 제안이유

○ 일반시민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사용시에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사용시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 종전의 “도로관리사업소장 승인”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신고”로 간소화하여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2조제2항)

○ 임차인이 임차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천재지변·공익사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인에게 건설기계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결정됨이 타당함으로 삭제함. (안 제12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용훈)

□ 내용별 검토

○ 조례 제12조제2항의 개정내용은 도로관리사업소 보유 건설기계를 임대 받은 임차인이 작업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작업 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의 절차를 종전의 “사업소장 승인”에서 “사업소장에게 신고”로 간소화하여 임차인의 건설기계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 같은 조례 제3항의 “임차인의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천재지변·공익사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업소장이 해당 건설기계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유사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임대 건설기계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규제완화를 요청한 2000. 7. 13차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기타 사항은 1999. 3. 15차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건설안전관리본부산하 사업소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건설관리사업소”를 “도로관리사업소”로 일치시키고, 징수 건설기계 사용료의 일반회계 납부를 의미하는 “잡수입”을 다른 법령 등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세입조치”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

□ 검토의견

○ 시 산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임차사용 절차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규정을 완화 또는 삭제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